

##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주 관 팀	주식운용팀, 채권운용팀
제정일자	2008년 8월 27일
개정일자	2009년 2월 4일 2009년 8월 1일 2009년 9월 8일 2010년 1월 1일 2011년 7월 1일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국내상장 지분증권, 채무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신설 2009.2.4>

#### 제 2 조 (투자중개회사 선정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)

① 국내상장 지분증권의 경우 <개정 2009.2.4, 2011.7.1>

구분	배점기준
<u>조사분석 서비스 유용성</u>	<u>30%</u>
<u>기업 탐방 등 리서치 지원</u>	<u>30%</u>
<u>매매채결업무 / 중개사 리스크 / 기타 서비스</u>	<u>40%</u>

② 국내상장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<개정 2011.7.1>

구분	배점기준
리서치 자료	<u>50%</u>
<u>매매채결업무 / 중개사 리스크 / 기타 서비스</u>	<u>50%</u>

③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

구분	배점기준
리서치	30%

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거래 능력	50%
중개사리스크	10%
중개수수료 및 기타	10%

제 3 조(투자중개회사 선정시 평가방법) ① 국내상장 지분증권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, 평가한다.

1. 매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평가주체는 주식운용본부 운용역 및 주식운용과 관련된 부서로 한다.
3. 제 2 조제 1 항의 평가항목으로 투자중개업자별로 평가배점을 부여하여 30 개 내외의 거래중개회사를 선정한다. <개정 2011.7.1>

② 국내상장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, 평가한다.

1. 매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평가주체는 주식운용본부 운용역 및 주식운용과 관련된 부서로 한다.
3. 제 2 조제 2 항의 평가항목으로 투자중개업자별로 평가배점을 부여하여 5 개 내외의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한다.

③ 채무증권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.

1. 매분기별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2. 평가주체는 채권운용담당본부 및 채권운용과 관련된 부서로 한다.
3. 제 2 조제 3 항의 평가항목으로 투자중개업자별로 평가배점을 부여하여 25 개의 거래중개회사를 선정한다. <개정 2009.8.1, 2010.1.1>
4. <삭제 2010.1.1>

④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.

1. 매분기별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2. 평가주체는 채권운용담당본부 및 채권운용과 관련된 부서로 한다.
3. 제 2 조제 3 항의 평가항목으로 투자중개업자별로 평가배점을 부여하여 6 개의 거래중개회사를 선정한다.

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선정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1>

제 4 조 (투자중개회사에 대한 약정배분기준)

① 국내상장 지분증권의 경우

1. 분기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
2.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. <개정 2011.7.1>

구분	배분 기준
----	-------

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A 그룹 5 개사	각 4% 이상
B 그룹 10 개사	각 1% 이상
C 그룹 15 개사 내외	각 10% 이하

② 국내상장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

1. 분기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.
2.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. <개정 2009.9.8>

구분	배분 기준
A 그룹 2 개사	40% 이상
B 그룹 3 개사	60% 이하

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배분기준은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개수가 5 개 미만이거나, 투자중개업자선정 및 배분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채무증권의 경우

1.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2.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. <개정 2009.8.1, 2010.1.1>

구분	배분 기준
A 그룹 10 개사	30% 이상
B 그룹 15 개사	70% 이하

3. 단, CD/CP 의 거래중개회사는 제 2 호의 비율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.1>

⑤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

1.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2.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.

구분	배분 기준
A 그룹 3 개사	40% 이상
B 그룹 3 개사	60% 이하

⑥ 제 4 항 및 제 5 항의 배분기준은 채무증권 및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설정액이 2,000 억원 이하이거나, 발행물의 발행주관사인 중개회사, 거래중개회사 선정 및 배분에 제한이 있는 펀드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 5 조 (보관 및 관리)** <신설 2009.2.4> ① 매분기별로 제 3 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분기 실행내역을 운용담당임원(또는 본부장)에게 확인·보고하고, 준법감시인 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.

##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---

- ② 관련 해당운용본부(해당부서)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(1)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3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4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5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6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